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3 Ⅱ 제3호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,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·방조한 경우	법 제75조	영업정지 3개월	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
--	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23 Ⅲ 제3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Ⅲ 제4호 전단 중 “사목”을 “사목, 아목”으로 한다.

아.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